

제250회 임실군의회 정례회에서 「임실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합니다.

2015. 6. 29.

임실군의회회장

## 1. 개정이유

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지방재정 확충 추동력 확보 및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자구노력의 필요성 제기로 주민세를 현실화 하고자 임실군 군세 조례를 이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균등분 주민세 개인의 세율 조정(인상) (안 제6조)
  -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: 3,000원 → 10,000원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 : 「지방세법」 제78조제1항제1호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협의 등

- 1) 부패영향평가/규제심사 : 원안동의
- 2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동의

라. 기 타

- 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
- 2) 입법예고(2015.6.6. ~ 2015. 6. 25.)결과 : 특기할 사항 없음
- 3) 비용추계서 : 미첨부사유서(붙임)
- 4) 참고자료 : 관련법령 발췌문, 타시군 사례

임실군 조례 제 호

## 임실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임실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호가목 “3,000원”을 “10,000원”으로 한다.

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적용례)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6조(세율) 법 7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개인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: 3,000원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(생   략)</p> <p>2. (생   략)</p>	<p>제24조(과세표준과 세율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개인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: 10,000원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
# **임실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## **1. 재정수반요인**

- 재정수반요인 없음

## **2. 미첨부 근거 규정**

- 「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 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인 미만인 경우

## **3. 미첨부 사유**

- 「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해당없음

## **4. 작성자**

- 재무과장 박 상 규

#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

관리번호	2015A전북임실031		
정책명	임실군 군세 조례		
소관부서	기관명	전라북도 임실군	
	부서명	재무과	
	담당자명	라경채	전화번호 063-640-2183
분석평가서 제출날짜	2015년 06월 16일		
주요 분석평가 내용 (재무과)	균등분 주민세 개인의 세율 조정(인상) (안 제6조) -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: 3,000원 → 10,000원		
종합 검토 의견 (분석평가책임관)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원안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선의견		
	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, 성별 특성반영,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  ○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: 해당 없음		
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.			
2015년 06월 17일			
<b>주민복지과장</b> (담당자/연락번호 : 박경숙/063-640-2123)			
재무과장 귀하			

## 참고 1 관련(상위) 법 발췌문

### □ 「지방세법」

제78조(세율) 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#### 1. 개인의 세율

가.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: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

나.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: 5만원

## 참고 2 타 시군 사례(2015.6월 기준)

구 분	단체수	자 치 단 체 명	비고
인상완료	1개 (7%)	• 정읍시(9,000원)	
추진확정	9개 (64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부안군(2,500원) 단계적 인상(5천원→8천원→1만원) “의회제출”</li> <li>• 남원시(3,600원) 단계적 인상(7천원→1만원) “의회제출”</li> <li>• 장수군(3,000원) 단계적 인상(7천원→1만원) “군수결재”</li> <li>• 순창군(3,600원) 인상(1만원) “군수결재”</li> <li>• 김제시(3,000원) 단계적 인상(7천원→1만원) “시장결재”</li> <li>• 무주군(2,000원) 단계적 인상(7천원→1만원) “추진확정”</li> <li>• 진안군(3,000원) 단계적 인상(7천원→1만원) “추진확정”</li> <li>• 군산시(3,000원) 인상(1만원) “시장결재”</li> <li>• 임실군(3,000원) 인상(1만원) “입법예고”</li> </ul>	
내부검토중	4개 (29%)	• 전주시, 익산시, 완주군, 고창군	